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장종태 · 이강일
용혜인 · 서왕진 · 정춘생
김준형 · 차규근 · 강경숙
신장식 · 김선민 · 이해민
백선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패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

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
·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
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
제3조제3항 신설 등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또는 관리 상태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) ①·② (생략)	제3조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</u> <u>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</u> <u>사 결과 주차장의 구조·설비</u> <u>또는 관리 상태가 이용자의 안</u> <u>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</u> <u>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</u> <u>·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</u> <u>선을 권고할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